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구분계산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을 “제3항에 따라”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제69조제2항제1호”를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영 제75조제4항”을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132조제1항”을 “제1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제54조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10호가목, 다목 및 라목 중 “제61조”를 각각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2조제7항제3호의4 중 “영 제76조제6항”을 “영 제75조제3항 단서, 영 제76조제6항”으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로 한다.

제82조제7항에 제10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6,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7,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

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 별지 제65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의5서식,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4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 별지 제76호의16서식(감),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1호의 서식 및 별지 제82호의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79조제10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작성 방법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명을 기입합니다.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
5. ⑦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③1톤당1운항일 이익을 곱한 금액에 ⑤란에 기재된 일수와 ⑥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의 선박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4.3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6. ⑧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⑦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사업 연도	. . . ~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종류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합계						

2.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금액

구 분		⑦근 거 법조항	⑧ 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	⑩차감 비과세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⑪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비 과세	제13조			
	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 호 부칙 제10 조·제40조			
	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			
	⑭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⑮				
	⑯				
	⑳ 합 계				

작성방법

-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니다.
-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금액란 중 ⑳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⑳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㉓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란의 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사업 연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분	② 근거 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 (공제)세액
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외	110		
㉒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㉓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㉔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㉕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㉖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㉗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㉘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㉙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㉚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㉛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구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구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㉝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㉞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㉟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㊲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㊳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㊵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㊶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㊷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㊹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77조	173		
㊺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㊻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㊽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㊾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 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세
액
감
면

세 액 감 면	⑬⑩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⑬⑪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⑬⑫ 해양박람회특구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⑬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⑬⑭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⑬⑮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⑬⑯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⑬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⑬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⑬⑲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⑬⑳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⑬㉑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⑬㉒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⑬㉓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⑬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⑬㉕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⑬㉖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D1		
⑬㉗ 소계		170			
세 액 공 제	⑬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101		
	⑬㉙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⑬㉚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⑬㉛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⑬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⑬㉝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⑬㉞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⑬㉟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⑬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⑬㊲ 소계		180		
⑬㊳ 합계(⑬㉗ + ⑬㊲)		110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분	② 근거 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 (공제)세액
세 액 감 면	15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111		
	160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161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16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16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16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165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16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167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13B		
	168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17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171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17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173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174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175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17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13H		
	177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178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17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18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181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182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18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18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185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186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18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188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18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13V		
190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C1			
191 소계			130		

	① 구분	② 근거 법조항	코드	⑤ 전기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198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199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199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199B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199C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199D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항	18R			
	199E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5항	15B			
	199F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2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200A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200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200C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200D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200E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200F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2항	15C			
	200G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200H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200I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200J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200K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200L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200M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200N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세액공제	200O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200P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200Q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B8			
	200R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15A			
	200S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200T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200U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200V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200W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200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200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200Z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201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S				
201A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B4				
201B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B5				
201C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201D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201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201F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201G 전자기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201H 전자기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201I 제3차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201J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201K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201L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0				
201M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201N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201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201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201Q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201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사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세 액 공 제	㉔ 이스포츠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1F1		
	㉕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㉖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㉗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㉘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1B6		
	㉙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㉚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X		
	㉛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Y		
	㉜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Z		
	㉝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1		
	㉞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2		
	㉟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3		
	㊱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9		
	㊲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B7		
	㊳ 소계		149		
	㊴ 합계 (㉑) + (㉒)		150		
	㊵ 공제감면세액 총계 (㉓) + (㉔)		151		
	㉖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77조	183		
	㉗ 간주·간접 외국 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189		
㉘ 간접투자회사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의2	1E5			

작성방법

- ㉔ 근거 법조항란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 ㉔ 대상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및 부표 5의2부터 부표 5의5까지)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 ㉔ 감면(공제)세액란 및 ㉗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 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및 부표 5의2부터 부표 5의7까지)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 ㉔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㉔ 간주·간접 외국 납부세액공제액 및 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㉔란, ㉔란 또는 ㉔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㉔란, ㉔란 또는 ㉔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㉔란, ㉔란 또는 ㉔란의 ㉔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연구비·인력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구 공제감면코드: 132).
- 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㉔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㉔ 면제세액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적습니다.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 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사 업 연 도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㉑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 13조	601	
	㉒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 22조	61A	
	㉓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제40조	604	
	㉔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 104조의2제1항	605	
	㉕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 13조의4	62Q	
	㉖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 104조의31	62R	
	㉗		606	
	㉘ 합 계		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⑥+⑦)
익 금 불 산 입	㉑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8조의2	62D			
	㉒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 10조의2	627			
	㉓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622			
	㉔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33조	62A			
	㉕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34조	62F			
	㉖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38조의3	611			
	㉗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 39조제2항	62G			
	㉘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40조	62J			
	㉙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 44조	613			
	㉚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 45조제1항	62H			
	㉛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45조의2	62K			
	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46조	62I			
	㉝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46조의4	628			
	㉞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47조의4	625			
	㉟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60조제2항	615			
	㊱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61조제3항	616			
	㊲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62조제1항	62P			
	㊳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63조	617			
	㊴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63조의2제5항	618			
	㊵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85조의2	629			
	㊶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85조의5	631			
	㊷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85조의7	62B			
	㊸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 85조의8	62E			
	㊹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 85조의9	62L			
	㊺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 104조의3	62M			
	㊻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 104조의2제2항	620			
	㊼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 104조의16	62C			
	㊽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조의21제2항	62N			
	㊾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 104조의23	62O			
	㊿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 121조의26	681			
	①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 121조의27	682			
	②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 121조의28	683			
	③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 121조의29	684			
	④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 121조의30	685			
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 121조의31	686				
⑥		621				
⑦ 합 계		640				

3. 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 금 산 입	⑭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	659			
	⑭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	63B			
	⑭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J			
	⑭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657			
	⑭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L			
	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63M			
	⑭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의2	644			
	⑭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645			
	⑭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	63E			
	⑭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647			
	⑭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63F			
	⑭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664			
	⑭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63G			
	⑭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650			
	⑭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1			
	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666			
	⑭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654			
	⑭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63N			
	⑭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63H			
	⑭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630			
	⑭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63Q			
	⑭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63I			
	⑭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63A			
	⑭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63C			
	⑭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63P			
	⑰ 합 계			670		

4.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⑰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제7항	66A	
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8조제3항	66B	
⑱ 합 계		6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⑲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⑲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⑲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⑲ 기 타		775		
	⑲ 소 계		780		
법 인 세 법 등	⑲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⑲ 업무관련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 등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⑲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⑲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⑲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787		
	⑲ 기 타		785		
⑲ 소 계		784			
⑲ 추가납부세액 합계 (⑲ + ⑲)			790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⑬, ⑳)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
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나. ㉞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㉞ 법인세란 합계액 중 ()안의 금액을 ㉞ 세액란에 적습니다.
 - 다. ㉟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라. ㊱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
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마. ㊲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
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바. 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사. ㊴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
여 적습니다.
 - 아. ㊵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㊶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
3호서식)"의 ㊷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 연도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근거 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 명세	공제 대상 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제1항	출연금 × 10/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 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 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18R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제8조의3 제5항	출연금 × 5(10)/100	15B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 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제1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제2호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0D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제3호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6B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제1호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제2호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10E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제3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 30(40)/100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 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 × 5/100	15C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제19조	'22.1.1. 이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5/100	18H		
연구·인력개발비비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 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 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을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 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 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 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 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5)/100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5)/100	18B	
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제작비용 × 10(15)/100	15A	
세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4S	
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4X	
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8J	
법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기업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2백만원)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전환)	제29조의8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4백5십만원)	18B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8B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기업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㉑ 구분	근거 법조항	㉒ 계산기준	코드	㉓ 계산 명세	㉔ 공제 대상 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 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제3항	'20. 12. 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 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서 1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 제3항	법인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1만원 *한도: 연 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 제1항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 제2항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 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 제4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 1. 1. ~ '12. 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 1. 1. ~ '16. 12. 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 1. 1. ~ '19. 12. 31.: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 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 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126조의7 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 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램업사업자의 수입금액증 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손합계금액)×50/100]/익금및손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 금및손합계금액×5/100)/익금및손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해상물동량 운송비용 0.5% +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 1% (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10C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 10/100	1F1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 공제	제13조의3 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 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 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 × 3%	1B7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견5/7.5, 중소10)/10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9, 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 중소25)/100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 중소30)/100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25. 1.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B3				
통합투자세액공제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13Z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1B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조의15	투자금액×3%	1B6		
합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㉔ 구분	공제 대상 세액			당기 공제 대상 세액						㉒ 계	㉓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㉕ 공제세액 (㉒-㉓-㉔)	㉖ 소멸	㉗ 이월액 (㉒+㉕-㉖-㉗)
	㉕ 사업연도	㉘ 당기분	㉙ 이월분	㉚ 당기분	㉛ 1차 연도	㉜ 2차 연도	㉝ 3차 연도	㉞ 4차 연도	㉟ 5차 연도						
					㊱ 6차 연도	㊲ 7차 연도	㊳ 8차 연도	㊴ 9차 연도	㊵ 10차 연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					

작성방법

- ㉔ 구분란: 제1쪽의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란에 적혀 있는 코드를 적습니다.
- ㉕ 사업연도란: 이월된 공제 대상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㉘ 당기분란: ㉕ 공제 대상 세액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 ㉙ 이월분란: 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㉗ 이월액을 적습니다.
- ㉚ 당기분란: 당기분 세액을 적습니다.
- ㉛ 1차 연도란부터 ㉟ 10차 연도란까지: ㉕ 사업연도란에 적힌 사업연도부터의 경과 연차에 해당하는 란에 ㉚ 이월분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 ㊱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 란에 조정하여 적고, 합계란(※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㉒ 세액공제란의 ④ 조정감란에 적힌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근거 법조항란 중 “구”는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앞쪽)

사업 연도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세액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1.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공제한도	① 산출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	
	③ 과세표준	
	④ 공제한도[① × (② + ⑥) / ③]	
당기공제 대상세액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⑦ 당기 공제대상 세액(⑤ + ⑥)	
⑧ 공제한도 초과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⑨ 차기 이월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2. 공제세액 계산

⑩ 사업연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 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공제액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⑪-⑫)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④)	⑮ 차기 이월액 (⑬-⑭)
~					
~					
~					
~					
당기					
합계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의 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의 ⑥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사업연도란: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연도를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서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5. ⑫ 전기 누적 공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6.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이월공제기간(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차감하고 적습니다.
7.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란: ④ 공제한도란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에 적힌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사업 연도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

① 연 번	소득지급자		간접투자회사등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⑤ 간접투자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⑥ 간접 투자 외국 법인 세액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② 상호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⑦ 외국 원천 징수 세율	⑧ 국내 원천 징수 세율	⑨ 공제율	⑩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 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합계								

작성방법

1. 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3. 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란: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5. ⑦~⑩ 란: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가. ⑦ 외국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 나. ⑧ 공제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
- 다. ⑩ 조정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원천징수 시 사용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액을 적습니다.

사업 연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분	② 감면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 비과세	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⑩란 해당 금액
	㉒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㉓		606		
⑥ 소득 공제	㉔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⑧란 해당 금액
	㉕ 주택임대소득공제 (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㉖			()	
	㉗		458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세율-산출세액
⑧ 세액 감면	㉘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㉙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㉚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㉛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㉝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㉞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㉟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㊲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㊳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㊵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㊶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㊷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㊺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㊻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㊾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㊿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⑬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⑬③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⑬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⑬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⑬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⑬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⑬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⑬③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⑬③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⑭④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⑭④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⑭④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⑭④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⑭④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⑭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⑭④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⑭④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⑭④		164	

① 구분	② 감면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⑨ 세액 공제	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㉖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㉗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㉘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㉙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㉚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제8조의3제5항	15B		
	㉛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㉝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㉞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제2항	15C		
	㉟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㊱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㊲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㊳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㊴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㊵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㊶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㊷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㊺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	15A		
	㊻ 초연결 네트워킹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㊽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㊾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㊿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 제3차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㉈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㉉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㊱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0		
	㊲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㊳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㊴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㊵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 104조의 30	18M		
	㊶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조의 32	10C		
	㊷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조의 35	1F1		
	㊸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 13조의3제1항	18N		
	㊹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 13조의3제3항	18P		
	㊺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㊻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㊼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㊽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㊾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㊿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Z			
㉃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9			
㉄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		165			
㉇ 감면세액 합계			1A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의
④ 감면(공제)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의
해당 금액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 (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분	금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⑨ 공제세액	비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감면(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	18S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성 방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⑩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근거 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사 업 연 도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구분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③취득일			
	④내용연수(기준·신고)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⑤기말현재액		
		⑥감가상각누계액		
	⑦미상각잔액(⑤-⑥)			
회사계산	회사계산	⑧전기말누계		
		⑨당기상각비		
상각비	상각비	⑩당기말누계(⑧+⑨)		
		자본적 지출액	⑪전기말부인누계	
			⑫당기지출액	
⑬합계(⑪+⑫)				
⑭취득가액(⑦+⑩+⑬)				
⑮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상각 범위액	당기산출	⑯일반상각액		
	상각액	⑰특별상각액		
계산	⑱계(⑯+⑰)			
	⑲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⑱, 단 ⑱ ≤ ⑭ - ⑧ - ⑪ + ⑮ - 전기 ⑳}			
⑳회사계상상각액(⑨+⑫)				
㉑차감액(⑳-⑲)				
㉒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㉓상각부인액(㉑+㉒)			
	㉔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㉕, 단 ㉕ ≤ △㉑)			
부인액누 계	㉕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㉖)			
	㉖당기말부인액누계(㉕+㉓- ㉔)			
당기말의 제상각액	㉗당기의제상각액(△㉑ - ㉔)			
	㉘의제상각의누계(전기㉙+㉗)			
신고조정 감가상각 비계산 (2013. 12. 31. 이전취득 분)	㉙기준상각률			
	㉚종전상각비			
	㉛종전감가상각비 한도[⑳-{(㉖-㉕)}]			
	㉜추가손금산입대상액			
㉝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신고조정 감가상각 비계산 (2014. 1. 1. 이후 취 득분)	㉞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㉟기준감가상각비 한도			
	㊱추가손금산입액			
㊲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㉖-㉝-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광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 계산시
$$\text{미상각잔액} \quad \times \quad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text{해당 광구의 잔존채굴예정량}}$$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3. ㉓, ㉔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사업 연도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㉓)]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 [(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 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 [(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 [(⑧-⑪)×10%, 30%]		⑰ 한도초과액 [(⑬-⑮)>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㉓)]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⑮)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㉑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㉒기공제액	㉓공제가능 잔액(㉑-㉒)	㉔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㉕차기이월액 (㉓-㉔)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㉖지출액 합계금액	㉗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㉘차기 이월액 (㉖-㉗)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작성 방법

-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㉑차감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㉒기부금 합계액 (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㉓손금산입 합계 (⑥+⑪+⑯)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 ~ 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④한도액란: " $(①-②)>0$ "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A-B)>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㉔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⑦란)도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 - ⑪)의 30%로 합니다.
- ⑳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㉑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㉔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㉑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㉖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 · 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사 업 연 도	구 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구 분	금 액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④ $1,200\text{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times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times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times 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times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times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times 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times 20(10)/100$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 한법」 제136조 제3항)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와 (⑧ \times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 한법」 제136조 제6항)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⑬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 ⑫의 합계액과 (⑧ \times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⑬)		
	⑮ 한도초과액(③-⑭)		
	⑯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③과 ⑭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3.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⑧)
 -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 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⑪, ⑫의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⑫의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현금 구입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6. ⑮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사 업 연 도	· · · ~ · ·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 일반수입금액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 합 계 (① + ②)
금 액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⑥ 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⑤-⑥)					
⑧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 총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⑪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 총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⑬ 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 총지출액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⑮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⑯ 총초과금액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⑪+⑬+⑮)				
	⑱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⑥+⑰)				

작성 방법

1.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⑩에는 총초과금액을 적습니다.
 -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지출액을 적습니다.
 -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업무추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 ⑭에는 총지출액을 적습니다.
 - 라.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⑮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⑯에는 총초과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현금구입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 마.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 ⑪, ⑬ 및 ⑮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⑱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 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⑰란의 합계) 적습니다.

사업 연도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업무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해당, []미해당]

① 차량번호	② 차종	③ 임차여부	④ 보험가입여부	⑤ 전용번호판착여부	⑥ 운행기록작성여부	⑦ 총주행거리(km)	⑧ 업무용사용거리(km)	⑨ 업무사용비율(⑧/⑦)	⑩ 보험의가입상수	⑪ 실제보험가입수	⑫ 보험가입수비율(⑪/⑩)	⑬ 취득가액(취득일, 임차기간)	⑭ 해당연도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⑰ 임차료	⑱ 유류비	⑳ 보험료	㉑ 수선비	㉒ 자동차세	㉓ 기타	㉔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㉕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⑳ 차량번호	㉗ 업무사용금액			㉘ 업무외사용금액			㉙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㉚ 손금불산입합계(㉜+㉙)	㉛ 손금산입합계(㉔-㉚)
	㉚ 감가상각비(상당액) [(㉖ 또는 ㉗) × ㉘ × ㉙]	㉜ 관련비용 [(㉔-㉖ 또는 ㉔-㉗) × ㉘ × ㉙]	㉜ 합계(㉚+㉜)	㉚ 감가상각비(상당액) (㉖-㉚ 또는 ㉗-㉚)	㉜ 관련비용 [(㉔-㉖ 또는 ㉔-㉗)-㉜]	㉜ 합계(㉚+㉜)			
㉜	합계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③⑨ 차량번호	④⑩ 차종	④① 취득일 (입차기간)	④② 전기이월액	④③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④④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④⑤ 손금추인(산입)액	④⑥ 차기이월액 (④④-④⑤)
④⑦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④⑧ 차량번호	④⑨ 양도일자	⑤⑩ 양도가액	⑤① 세무상 장부가액				⑤⑥ 처분손실 (⑤②-⑤⑤<0)	⑤⑦ 당기손금산입액	⑤⑧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⑤⑥-⑤⑦)
			⑤② 취득가액	⑤③ 감가상각비 누계액	⑤④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④⑥)	⑤⑤ 합계 (⑤②-⑤③+⑤④)			
⑤⑨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⑥⑩ 차량번호	⑥① 차종	⑥② 처분일	⑥③ 전기이월액	⑥④ 손금산입액	⑥⑤ 차기이월액 (⑥③-⑥④)
⑥⑥ 합계					

작성 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해당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 나. ① 차량번호란: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 다. ② 차종란: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 라. ③ 임차여부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 마. ④ 보험가입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 바. ⑤ 전용번호판부착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부착, 미부착 또는 해당 없음)
- 사. ⑥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 아. ⑦ 총주행거리란: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자. ⑧ 업무용사용거리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 차. ⑨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적습니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카. ⑩ 보험의무가입대상일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
- 타. ⑪ 실제보험가입일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 파. ⑭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임차)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 하. 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 가. ㉗ 업무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나. ㉘ 업무외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㉙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 가. ㉚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㉜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란: ㉚란의 금액과 ㉛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㉝ 손금추인(산입)액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가. ㉞ 감가상각비 누계액란: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 나. ㉟ 처분손실란: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다. ㊱ 당기손금산입액란: ㉟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라. ㊲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란: ㉟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㊱ 당기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 가. ㊳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㊴ 손금산입액란: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사 업 연 도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계상금 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총당금 등	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⑩ 퇴직급여총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⑩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의2	71			
	⑩ 대손총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⑩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손금 산입	⑩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⑩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⑩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⑩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2	50			
	⑩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 산 입	⑩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⑩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 조의4	78			
	⑩ 일반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66			
	⑩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42			
	⑩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73			
기업 업무 추진비	⑩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⑩ 기업업무추진비 (⑪, ⑫, ⑬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⑩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 조제3항	67			
	⑩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 권 기업업무추진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 조제6항	79			
⑩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⑩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 당 등	⑩ 소득처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조)	97		⑩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작성 방법

1. 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 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 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 표시).
3. 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⑩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②⑥ 금액의 계란의 금액과 ③④ 금액의 계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②⑨ 부인액 계란의 금액 및 ③⑥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②⑩ 부인액 계란의 금액 및 ③⑨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⑪ 특례기부금란:
 -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⑦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우리시주조합 기부금란:
 -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⑬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일반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⑭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8. ⑭ 일반기부금란:
 -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0. ⑯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⑭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1. ⑯ 기업업무추진비(⑯, ⑰, ⑱ 포함)란:
 -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④ 세무조정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⑮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⑳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㉑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⑯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란:
 -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⑯ 총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④ 세무조정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3. ⑰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회사계상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의 회사계상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과 ⑫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⑳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합 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합 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㉑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㉒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㉓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사업 연도	·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① 요건		② 검토 내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 수입금액			
중 기 업	⑩ 사업요건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01) ()업	(04)	(07)	(17)	(26)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02) ()업	(05)	(08)	적합 (Y)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 ①·③은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3) 그 밖의 사업	(06)	(09)	부적합 (N)	
		계					
중 기 업	⑪ 규모요건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가. 매출액			(18)	적합 (Y)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봄) 이내일 것	- 당 회사(10) () (억원)			적합 (Y)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부적합 (N)	
		나. 자산총액(12) () (억원)					
중 기 업	⑫ 독립성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19)	부적합 (N)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적합 (Y)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⑩의① 기준) 이내일 것				부적합 (N)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사업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20)	
중 기 업	⑬ 유예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적합 (Y)
		○ 사유발생 연도(13) () (년)				부적합 (N)	
소 기 업	⑭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⑩)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⑫)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27)
		○ 매출액				적합(Y), 부적합(N)	
소 기 업	⑮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봄)이다) 이내일 것	○ 매출액	- 당 회사(14) () (억원)			(22)	적합 (Y)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적합(Y), 부적합(N)	
소 기 업	⑯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봄)이다) 이내일 것						부적합 (N)

구분	① 요건	② 검토 내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견 기 업	⑩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⑩)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적합(Y), 부적합(N)	(28) 적합 (Y) 부적합 (N)						
	⑪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24) 적합(Y), 부적합(N)							
	⑫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억원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직전 3년</th> <th style="width: 25%;">직전 2년</th> <th style="width: 25%;">직전 1년</th> <th style="width: 25%;">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억원)</td> <td>(억원)</td> <td>(억원)</td> <td>(억원)</td> </tr> </tbody> </table>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억원)	(억원)	(억원)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작성 방법

- 제1쪽 ① 요건의 ㉓ 사업요건란 ②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㉓ 사업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겸(兼)업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및 관광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합니다),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
- 제1쪽 ㉓ 독립성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년부터 검토합니다.
- 제1쪽 ㉓ 유예기간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사유발생 연도(13)'에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쪽 및 제2쪽의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제2쪽의 (25)란은 ㉓란에 따른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Y)"에 체크하며, ㉓란에 따른 ① ~ ③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26)란은 ㉓ 사업요건란·㉓ 규모요건란·㉓ 독립성요건란에 따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㉓ 유예기간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27)란은 ㉓란 및 ㉓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 제2쪽 ④ 적정 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제1쪽 (26)란에서 "부적합(N)"으로 체크된 기업]으로서 ㉓란, ㉓란 및 ㉓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2. 운수 및 창고업	H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정보통신업	J	
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6. 가구 제조업	C32		27. 의류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7. 식품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26 제외)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4. 건설업	F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5. 도매 및 소매업	G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 (S94 제외)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7. 광업	B		41. 금융 및 보험업	K	
18. 담배 제조업	C12		42. 부동산업	L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4. 교육 서비스업	P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작성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9. 금융 및 보험업	K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21. 광업	B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2. 담배 제조업	C12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2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1. 건설업	F		
15. 가구 제조업	C32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5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 (S94 제외)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쪽)

1. 제출법인 기본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상 장 변 경 일	⑤ 합 병 · 분 할 일	⑥ 사 업 연 도 . . . ~ . . .
⑦ 주 권 상 장 여 부 (1) 유가증권시장상장 (2) 코스닥 (3) 그 외(비상장 등)	⑧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	(1) 여 (2) 부

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⑪ 종류	⑫ 주식수(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⑭ 주당발행(인수)가액				⑪ 종류	⑫ 주식수(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⑭ 주당발행(인수)가액	
⑯ 기 초							. .						
. .							. .						
. .							. .						
. .							. .						
. .							⑰ 기 말						

3.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⑱ 일련 번호	주 주 · 출 자 자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④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⑲ 구분	⑳ 성 명 (법인명)	㉑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㉒ 거주지국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㉔ 주식수 (출자좌수)	㉕ 지분율		
					㉓ 거주지국 코드	㉖ 양수	㉗ 유상 증자	㉘ 무상 증자	㉙ 상속	㉚ 증여	㉛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㉜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㉝ 신탁	㉞ 기타	㉟ 양도	㊱ 상속	㊲ 증여	㊳ 감자	㊴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㊵ 신탁	㊶ 이익 소각	㊷ 기타					
01	합 계																										
02	제출의무 면제 주주소계																										
03																											
04																											
05																											
06																											
07																											
08																											
09																											
10																											

4.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보유여부 (1) 여 (2) 부

④⑥ 자기주식 수(주)	④⑦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④⑧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수
--------------	----------------	------------------

5. 주식 신탁현황

④⑨ 일련 번호	신탁재산 현황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의결권 행사 지시권 보유자		신탁 계약기간	
	④⑩ 신탁 변동원인 (코드)	④⑪ 주식수	④⑫ 성명 (법인명)	④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⑭ 성명 (법인명)	④⑮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⑯ 성명 (법인명)	④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⑱ 성명 (법인명)	④⑲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⑳ 시작일	㉑ 종료일
01												
02												
03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④ 상장변경일란과 ⑤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⑦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⑨부터 ⑰까지)은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일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⑪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⑩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사유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자전환	주식배당	유상감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기타 (자사주소각 등)	이익소각 (자본금변동없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원인코드	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10

- * 액면가액 감소로 인한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⑮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⑯ 기초 및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⑰ 기말의 ⑮ 증가(감소) 자본금은 ⑫ 주식수(출자좌수) × ⑬ 당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⑮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는 ⑯ 기초의 ⑫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와 ⑮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⑳부터 ㉒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㉔부터 ㉖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 ⑲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㉚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㉛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구분	기재번호
(1) 원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㉜ 거주지국과 ㉝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 변동상황(㉞부터 ㉞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㉞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㉞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㉞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㉞, ㉞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㉞, ㉞ 신탁란은 사업연도 중 주식의 신탁 설정·해지·변경·종료 등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㉞ 이익소각란은 사업연도 중 상법 § 343① 단서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㉞)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제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 ㉞자기주식 수란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단위는 주입니다).
 - ㉞소각목적 자기주식수란에는 소각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하고, ㉞소각목적외 자기주식란에 소각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합니다.
 - 주식 신탁현황(㉞부터 ㉞까지)은 주주(출자자)가 신탁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 변동원인별로 세부내용을 작성하며, ㉞신탁 변동원인(코드)란에는 다음의 구분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신탁설정: 01, 신탁해지: 02, 신탁변경: 03, 신탁종료: 04

작성 방법

1. 주식·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서식)"의 주주(출자자)가 양도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감소한 경우의 변동 원인별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2. 주식수의 단위는 주(株)입니다.
3. 사업연도란: 개시 연월일 및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① 법인명란부터 ③ 대표자 성명란까지: 주식 발행법인·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란: 신고법인의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시를 합니다.
 -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구분코드 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초과인 법인의 주식(구분코드 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구분코드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 주식(구분코드 4·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주권비상장법인 주식(구분코드 6·7)
 - ※ 중소기업이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6. ④ 일련번호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 ⑤ 변동 원인(코드)란에는 주식수(출자좌수) 감소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 01, 상속: 02, 증여: 03, 환원: 04, **신탁: 05, 기타: 06**
8. ⑥ 성명(법인명)란 및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란: 주식(출자지분)이 감소한 주주(출자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9. ⑨ 성명(법인명)과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란: 주식(출자지분)이 증가한 주주(출자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⑥ 성명(법인명)란 및 ⑨ 성명(법인명)란: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란 및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기재번호
(1) 원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⑧ 거주지국 코드란 및 ⑪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에 따른 국가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⑫ 처분일란 및 ⑬ 취득일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구분	양도	상속	증여	환원	신탁	기타
처분일	양도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환원일	계약체결(해지)일	처분일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명의신탁일	취득일	취득일

- 처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1. ⑭ 주식수(출자좌수)란: 처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 []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input type="checkbox"/> 총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이동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시가법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평가방법 (합병법인의 당초 평가방법)	변경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input type="checkbox"/> 총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총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이동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이동평균법	
<input type="checkbox"/> 시가법	<input type="checkbox"/> 시가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화폐성외화자산등 또는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한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전문모금기관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_____ (단체의 직인) [인]

_____ 귀하

위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_____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주무관청**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는 전문모금기관이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해외 한국학교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마.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 월 — 일

제출인 : _____ (단체의 직인) [인]

_____ 귀하

위 해외 한국학교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주무관청**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는 해외 한국학교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 · 종 목
	소 재 지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종전 신고기한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신고기한 년 월 일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년 월 일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2항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3일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연 3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제출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1. 기본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고유번호	③ 국 적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⑦ 대표자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휴대전화
외국본점	⑩ 법인명	⑪ 주업종
	⑫ 소재지	⑬ 자본금(\$, 기타)

2. 임차 현황

(단위: m², 원)

⑭ 면 적	⑮ 보증금	⑯ 월세 (부가세포함)	임대인 인적사항	
			⑰ 법인명(성명)	⑱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직원 현황

(단위: 명, 원)

직원 수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국외에서 지급한 급여		⑳ 가입한 납세조합
⑲ 계 (⑳+㉑)	㉒ 내국인	㉓ 외국인	㉔ 인원	㉕ 지급총액	㉖ 인원	㉗ 지급총액	

4. 운영자금 현황

(단위: 원)

조달내역				지출내역			
㉚ 계 (㉛+㉜+㉝)	㉞ 본사	㉟ 관계회사	㊱ 기타	㊲ 계 (㊳+㊴+㊵)	㊶ 급여	㊷ 임차료	㊸ 기타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

(단위: 원)

㊹ 거래금액 합 계	주요 국내 거래처 현황					
	㊺ 상호	㊻ 사업자등록번호	㊼ 소재지	㊽ 거래구분	㊾ 주요품목	㊿ 거래금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6.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단위: 원, %)

㊿ 구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투자금액	㋄ 지분율	㋅ 업종
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국내투자법인 [] 지점 [] 기타 []						

7.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8. 주요업무내용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제출인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제출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input type="checkbox"/> 전산매체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input type="checkbox"/> 전산매체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 음

작성 방법

-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 작성하며, 제출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 “1. 기본사항”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본점의 현황을 적습니다.
 -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⑧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⑬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⑮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⑯ : 국외근로소득(⑮)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납세조합명을 적습니다.
 - “4. 운영자금 현황”에는 제출대상기간 동안 연락사무소의 자금운영에 관한 내역을 적습니다.
 - “5.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의 기본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적습니다.
 - ㉑ : 외국법인 본점이 신고대상기간 동안 국내거래처와 거래한 연간 총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 ㉒ : 외국법인 본점을 기준으로 매출, 매입 해당여부를 []에 √표를 합니다.
 - ㉔ :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재화, 기술, 용역제공 등으로 적습니다.
 - ㉕ : 다음 구분에 따라 []에 √표를 합니다.
 - 가. 국내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합니다.
 - 나. 지점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9-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점을 말합니다.
 - ㉖, ㉗ : ㉕의 구분이 국내투자법인인 경우 해당 투자금액, 지분율을 적습니다.
 - “7.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수취금액란”
 - 가. 제출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 주요업무내용”에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 업무연락, 시장조사, 자료수집 등)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연금,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input type="checkbox"/>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조약 관련 규정: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_____ 간의 조세조약	제 _____ 조	제 _____ 항	제 _____ 호	_____ 소득	세율 _____ %
	제 _____ 조	제 _____ 항	제 _____ 호	_____ 소득	세율 _____ %
	제 _____ 조	제 _____ 항	제 _____ 호	_____ 소득	세율 _____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 ⑪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아니오 []
- ⑫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아니오 []
- 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예 [], 아니오 []
- ⑭ ⑬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 [], 아니오 []
- ⑮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아니오 []
- ⑯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아니오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 신청인은 위 ⑪ ~ ⑭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⑪ ~ ⑫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인은 위 ⑮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⑯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대표자)

귀 하

붙임 서류	⑪, ⑫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⑰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⑱ 사업자(주인)등록번호
	⑳ 주소 또는 소재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뒤쪽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등을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또는 소재지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까지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① 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가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 ② 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③ 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 ④ 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⑤ 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 ⑥ 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 ⑦ 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⑨ 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 ⑪~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계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⑬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⑮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⑯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⑰~⑳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칭(성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국내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실질 귀속자	⑪ 명칭(성명)	⑫ 대표자 성명
	⑬ 납세자번호	⑭ 국내 전화번호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 코드
	⑰ 주소	
소득 지급자	⑱ 법인명(성명)	⑲ 납세자번호
	⑳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	
청구내용	㉓ 청구세액(원)	㉔ 소득종류
	㉕ 청구사유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3.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 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⑨ 유형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⑪ 금액(단위:)	⑫ 비율(%)		
⑮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대리인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사업자(주인)등록번호
	⑲ 주소 또는 소재지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인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 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⑯~⑲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까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2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 표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신탁 재산	비영리	국 가 지방 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법인 기타
					지점 (국내사업 장)
					연 락 사무소
					기타
					해당 미해당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 전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법인과세 신탁재산		
			공 익 법 인		
					외국 · 외투 법인
					국 적
					투자 비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법 인 명(상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 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상 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5.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첨부	미첨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m ²	m ²					전화번호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여부		인·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여
						신 고
						등 록
						인·허 가
						기 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각자·공동 대표		담당 업무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각자·공동 대표		담당 업무
대표자 현황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종업원 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 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영위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재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성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업무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사업장(단체)소재지”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 동시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자(轉借)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첨부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첨부합니다)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택 계약서(법인과세 신택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 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호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④ $1,2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 (중소기업 3,600만원)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 36조제3항)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 36조제6항)	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적은 금액]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⑬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 ⑫의 합계액과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⑬)			
⑮ 한도초과액(③-⑭)			
⑯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③과 ⑭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⑰ 연결법인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⑳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㉑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 비 지출액	㉒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⑲×㉑/⑳)

작성 방법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⑯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㉔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3.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⑧)
 -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 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
5.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⑪, ⑫의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⑫의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현금 구입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6. ⑮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7. ⑲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⑮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8. ㉒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㉓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서 ㉔ 손금불산입액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수입금액명세

①연결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수입금액총 액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 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⑥일반 수입금액 (③-④-⑤)
합 계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계산

⑦연결법인 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기업업 무 추진비 계상액 (⑩+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⑮기업업 무추진 비 해당 금 액 (⑨-⑩)
			⑩합계 (⑪ + ⑭)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⑭사적사용 경 비 (연결법인 지급액 제 외)	
				⑪계 (⑫+⑬)	⑫기업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합 계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⑯연결법인 명	⑰사업자 등록번호	⑱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 액 합계	⑲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⑳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⑱-⑲)
합 계				

작성 방법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란: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⑩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⑬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란: 각 연결법인별로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⑱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⑬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㉔)]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 [(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⑪)>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 [(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 [(⑧-⑪)×10%, 30%]		⑯ 한도초과액 [(⑬-⑮)>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㉔)]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⑮)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	------------------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㉑기부금 코드	㉒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㉓기공제액	㉔공제가능 잔액(㉒-㉓)	㉕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㉖차기이월액 (㉔-㉕)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㉗기부금 코드	㉘지출액 합계금액	㉙해당사업연도 손금산입액	㉚차기이월액 (㉘-㉙)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작성 방법

-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㉕기부금조정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⑩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⑩손금산입 합계(⑥+⑪+⑬)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④한도액란: " $(①-②)>0$ "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④-⑥)>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㉘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⑥소득금액 차감잔액 - ⑪)의 20%로 합니다.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㉘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 세액	
구분	금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분	⑦ 감면내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⑨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⑩ 비과세	⑩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①란 해당 금액
	⑩② 벤처투자회사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⑩③		606		
⑪ 소득공제	⑪④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⑪④란 해당 금액
	⑪⑤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⑪⑥				
	⑪⑦		458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⑬ 세액감면	⑬①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⑬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⑬③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⑬④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⑬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⑬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⑬⑦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⑬⑧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⑬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⑬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⑬⑪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⑬⑫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8	181		
	⑬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9	182		
	⑬⑭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97		
	⑬⑮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	198		
	⑬⑯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D2		
	⑬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4호	1D3		
	⑬⑱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D4		

㉓ 세액 감면

㉑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6호	1D5	
㉒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7호	1D7	
㉓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D6	
㉔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D8	
㉕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10호	1D9	
㉖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㉗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㉙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㉚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㉛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㉝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3R	
㉟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E1	
㊱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E2	
㊲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E3	
㊳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E4	
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㊶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㊷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㊸			164	

⑭ 세액 공제	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⑮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⑯ 대중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⑱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⑲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⑳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제8조의3제5항	15B	
	㉑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㉒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㉓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제2항	15C	
	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㉖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㉗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㉙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㉚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㉛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㉟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	15A	
	㊱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1	
	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㊳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㊵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㊶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㊷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㊹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㊺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㊻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㊼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㊽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1	
	㊾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㊿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①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0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③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④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⑤ 우수 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⑥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⑦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1F1	
	⑧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⑨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⑪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⑫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⑬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⑭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⑯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⑰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⑱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Z		
⑲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9		
㉑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㉒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㉓		165		
⑮ 감면세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감면(공제)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의
해당 금액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 조항 중 “구”는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 세액
구분	금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분	⑦ 감면내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⑨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⑩ 비과세	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⑩벤처투자회사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⑩		606		
⑪ 소득공제	⑪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⑪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⑪				
	⑪		458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x세율-산출세액
⑬ 세액감면	⑬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⑬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⑬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 제4항	13F		
	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⑬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8	181		
	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9	182		
	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97		
	⑬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	198		
	⑬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D2		
	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4호	1D3		
	⑬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D4		

㉒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6호	1D5	
㉓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7호	1D7	
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D6	
㉕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D8	
㉖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10호	1D9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㉘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㉙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㉚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㉛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㉟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3R	
㊱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E1	
㊲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E2	
㊳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E3	
㊴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E4	
㊵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㊶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㊷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㊹			164	

⑭ 세액 공제	⑭④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⑭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⑭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⑭⑦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⑭⑧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⑭⑨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⑭⑩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제8조의3제5항	15B	
	⑭⑪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⑭⑫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⑭⑬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⑭⑭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제2항	15C	
	⑭⑮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⑭⑯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⑭⑰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⑭⑱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⑭⑲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⑭㉑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⑭㉒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⑭㉓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⑭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⑭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8B	
	⑭㉖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	15A	
	⑭㉗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⑭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⑭㉙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⑭㉚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⑭㉛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⑭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⑭㉝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⑭㉞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⑭㉟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⑭㊱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⑭㊲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⑭㊳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⑭㊴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⑭㊵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⑭㊶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⑭㊷ 기업의 경기부 설차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⑭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⑭㊹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⑭㊺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⑭㊻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⑭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⑭㊽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1F1	
	⑭㊾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⑭㊿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⑮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⑮②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⑮③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⑮④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⑮⑤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⑮⑥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⑮⑦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⑮⑧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⑮⑨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Z		
⑮⑩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9		
⑮⑪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86		
⑮⑫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7		
⑮⑬		165		
⑮ 감면세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감면(공제)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의
해당 금액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③ 법인세 감면세액란: ⑮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⑨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⑩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⑪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4. 그 밖에 ⑩ 비과세, ⑪ 소득공제, ⑬ 세액감면 및 ⑭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근거 조항 중 “구” 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용역제공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음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③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④관련비용 명세는 ③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관리번호		① 대상기간	년 분기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본점소재지)	⑤ 금융 기관명
		⑥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⑦ 기축가상자산 가 액 적용가상자산사 업자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⑧ 거래자					⑨ 가상 자산 종류		⑩ 거래 전 잔고	⑪ 거래 일시	⑫ 거래 유형	⑬ TXID	⑭ 거래 수량	⑮ 단가	⑯ 양도 등		⑰ 취득 등		⑱ 거래상대방			⑲ 거래 후 잔고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계정 관리 코드	금융 기관 코드	계좌 번호	가상자산 주소	코드							가상자산명칭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6년 1분기).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금융기관명, ⑥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⑧거래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휴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금융기관코드 조회” 참조), 계좌번호, 가상자산주소(지갑 주소)를 적습니다.
6. ⑨가상자산 종류: 휴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예시: ‘비트코인(BTC)’의 경우 코드란에 ‘000145’, 심볼란에 ‘비트코인(BTC)’ 가상자산코드 조회 표 안에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코드란에 ‘999999’ 심볼란에 ‘명칭(심볼)’)
 7. ⑩거래 전 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 취득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8. ⑪거래일시: 거래 발생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시(24시간 단위 2자리), 분(2자리), 초(2자리) 총 14자리로 적습니다.(예시 : 2027년 3월 1일 오후 1시 59분 59초 → 20270301135959)
 9. ⑫거래유형: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 ⑫거래유형별 ⑬양도 등, ⑭취득 등, ⑮거래상대방은 아래 작성방법 참조[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⑪코드	유형	거래유형	⑬양도 등	⑭취득 등	⑮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원화→가상자산A)	빈칸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3	교환양도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
04	교환취득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빈칸	가상자산B의 교환취득가액과 교환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빈칸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과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수수료란에 적고,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의 그 가상자산의 시가와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수수료란에 적습니다.	빈칸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 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 거래소 내 계정간 이전 포함	빈칸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빈칸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 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 거래소 내 계정간 인입 포함	빈칸	빈칸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인출된 가상 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 수령 시 수령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작성 방법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⑫거래유형을 '대여'로 하여 작성하며 ⑨가상자산 종류 · ⑬TXID · ⑭거래수량 · ⑮단가는 공란 처리함

예) 대여 대가로 금전 30 수령, 수령 시 수수료 1 발생한 경우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	-							10	20270301135959	05	-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⑫거래유형을 '대여', '기타취득'으로 하여 각각 작성하되 ⑨가상자산 종류, ⑬TXID, ⑭거래수량, ⑮단가는 각각 동일함

예) 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3개 수령 (수령 시 시가는 단위당 10), 수령 시 수수료 1 발생한 경우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 전 잔고	⑪거래 일시	⑫거래 유형	⑬TXID	⑭거래 수량	⑮단가	⑯양도 등		⑰취득 등		⑱거래 후 잔고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000145	BTC							10	20270301135959	05	Ox96864df	
000145	BTC	10	20270301135959	99	Ox96864df	3	10			30	공란	13	

10. ⑬TXID : 거래유형이 대여, 이전, 인입, 기타취득의 경우 적습니다(트랜잭션ID, 거래 ID, TX Hash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상에서 체결된 거래의 고유식별기호를 기재).

11. ⑭⑬거래수량: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을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

12. ⑮단가: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기타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13. ⑯양도 등: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⑰취득 등: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인입,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거래자수정어부: 거래자가 장외(개인간 거래, 해외거래소 등)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Y, 그 외에는 N을 적습니다.

15. ⑱거래상대방: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이전·인입·기타취득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참고: 거래 시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거래소가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대로 작성하고, 이용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거래소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란으로 작성)

16. ⑲거래 후 잔고: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 취득의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발생한 연도를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법인세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금융기관명, ⑥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⑧거래자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 취득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금융기관코드 조회” 참조),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6. ⑨거래내용 : 거래자별,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양도 등’, ‘취득 등’, ‘이전’, ‘인입’, ‘대여’ 거래내용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⑩가상자산 종류: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예시: ‘비트코인(BTC)’의 경우 코드란에 ‘000145’, 심볼란에 ‘비트코인(BTC)’ 가상자산코드 조회 표 안에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코드란에 ‘999999’ 심볼란에 ‘명칭(심볼)’)
 - 9. ⑪양도 등 거래 :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연간 양도 등 거래의 수량, 가액,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매도·교환양도, 이전 거래 시 가상자산으로 수수료 지급 등 가상자산 보유수량이 감소하는 거래를 포함하되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을 받은 거래는 ⑪양도 등 거래에 작성하지 않고 ⑮대여 거래에 작성)
※ 수량은 최소 거래단위까지 작성[예]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가액 및 수수료는 원단위(소수점 이하 절사)로 작성. 이하 동일
10. ⑫취득 등 거래 :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연간 취득 등(매수·교환취득·기타취득(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한 경우 등))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1. ⑬이전 거래 : 다른 가상자산주소(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 이전(거래소 내 계정간 이전 포함)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2. ⑭인입 거래 : 다른 가상자산주소(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부터 인입(거래소 내 계정간 인입 포함)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3. ⑮대여 거래 : 가상자산 대여 거래로 받은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포함)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4. ⑯연간 변동내역 : 대상연도 1년간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증감과 기초·기말재고의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량 변동내역 : ⑰기초재고 + ⑱증가 - ⑲감소 = ⑳기말재고]
15. ⑰기초재고 : 대상연도의 기초(1.1.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 거래자의 단위당 취득가액 수정여부(Y/N)를 적습니다.
16. ⑱증가 : 수량은 ⑫ 취득 등 거래 수량과 ⑭ 인입 거래 수량의 합계 수량을 기재하고, 단위당 취득가액은 ⑫ 취득 등 거래의 가액을 수량(=⑫ 취득 등 거래 수량+⑭ 인입 거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된 가액을 기재합니다.
(작성예) ⑫ 취득 등 거래의 수량과 가액이 각각 10개, 150원이고, ⑭ 인입 거래 수량이 5개인 경우: ⑱ 증가의 수량 = 15개(=10개+ 인입 5개), 단위당 취득가액=10원(=150원/15개)
17. ⑲감소 : ⑪ 양도 등 거래의 수량과 ⑬이전 수량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18. ⑳기말재고 : 대상연도의 기말(12.31. 24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작성예) ⑰ 기초재고 : 수량 10개, 단위당 가액 5원, ⑱ 증가 : 수량 15개, 단위당 취득가액 10원, ⑲ 감소 : 수량 5개인 경우,
㉑기말재고 : (수량) 기초 10 + 증가 15 - 감소 5 = 20.00000000, (단위당 가액) [기초 50원(=10개×5원) + 증가 150원(=15개×10원)] ÷ 25개(기초 10 + 증가 15) = 8원/1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p> <p>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p>	<p>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삭 제></p> <p><삭 제></p> <p>③ 주무관청은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p>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2. (생략)

⑤ ~ ⑦ (생략)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

1.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삭제>

<삭제>

<삭제>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 10서식에 따른다.

④ ~ ⑥ (생략)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 ③ (생략)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9조제2항-----

-----.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
----- 신고 또는 변경 신고-----
--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 (생략)

2. ~ 8. (생략)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신설>

-----.

1. ----- 제131조제1항 -

~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 6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
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
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
은 경우

나. (생략)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
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
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10조제4항 각 호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 제36조
제1항제2호-----

나. (현행과 같음)

다. -----
----- 제36조
제1항제2호-----

라. ----- 제36조
제1항제2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
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 자. (생략)

11. (생략)

제82조(서식) ① ~ ⑤ (생략)

⑥ 삭제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략)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
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
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3의5. ~ 17. (생략)

<신설>

마. ~ 자.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⑦-----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영 제75조제3항 단서, 영
제76조제6항 -----
----- 환매금지형집
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
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
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
평가방법변경신고서

3의5. ~ 10의6. (현행과 같음)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다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p>11. ~ 17. (생략)</p> <p>⑧ ~ ㉑ (생략)</p>	<p><u>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u> <u>서</u></p> <p>11. ~ 17. (현행과 같음)</p> <p>⑧ ~ ㉑ (현행과 같음)</p>
---	--